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44호 2011. 6. 15. (수)

【 조 례 】

- 정선군조례 제2252호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조례 제2253호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정선군조례 제2254호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정선군조례 제2255호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정선군조례 제2256호 정선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11

【 규 칙 】

- 정선군규칙 제1180호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3
- 정선군규칙 제1181호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4

【 고 시 】

- 정선군고시 제2011-47호 사망지 지정 고시문..... 18

【 공 고 】

- 정선군공고 제2011-336호 2011년 여행바우처 사업 공고..... 20
- 정선군공고 제2011-347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23
- 정선군공고 제2011-348호 2011년도 마을관리휴양지 지정 공고..... 24
- 정선군공고 제2011-352호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안내 및 열람공고(변경)..... 25
- 정선군공고 제2011-358호 2011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 26
- 정선군공고 제2011-360호 농축산물 도난 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8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6. 15.

정선군조례 제2252호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장학금”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13인”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체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④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현재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위원을 상위법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기금운영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함 (안 제6조)
- 위원회 위원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안 제6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6. 15.

정선군조례 제2253호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23조 규정에 의하여”를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원대상”이란 양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군민의 자녀를 말한다. 다만, 첫째아, 둘째아 중 한명이라도 사망시에는 지원기준일 당시의 생존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요건 및 대상) ①양육비 등 지원은 지원기준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지원대상은 군 관내에서 출생한 자녀에 한하고,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선군양육비등지원시책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1인”을 “1명”으로, “12인”을 “12명”으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2. 주민생활지원과장
3. 자치행정과장
4. 보건소장
5.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6. 저출산·양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⑧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위원회”를 각각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녀 1명 당 지원액은 연간 300만원 범위 안에서 예산, 물가상승률, 출산실태, 인구증감률, 군민의 평균적인 양육비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최종 결정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 대신 지원액에 상당하는 육아용품 등 물품을 구입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원기간은 둘째 자녀는 지원기준일로부터 1년, 셋째 자녀 이상은 지원기준일로부터 만 12세 까지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군 관내를 떠나 주소지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그 때부터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출산육아용품 등 지급) 군수는 양육비 외에 필수적으로 양육에 소요되는 출산육아용품 등을 구입하도록 출생아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

- 1. 첫째아 : 10만원 상당
- 2. 둘째아 : 20만원 상당
- 3. 셋째아 이상 : 30만원 상당

②제1항의 출산육아용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이 관장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둘째 자녀에 관한 사항은 2011. 1. 1. 출생자녀부터 적용한다.

개 정 이 유

- 기존 셋째자녀부터였던 양육비 지원을 둘째자녀로 확대함에 따라 제명 변경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출산육아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 세 자녀 이상”을 “출생아”로 하고, 둘째아 양육비 지급기간을 명시 (제명, 안 제2조2호, 안 제12조제1항)
- 출생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첫째아, 둘째아 중 한명이라도 사망시에는 지원 기준일 당시의 생존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정한다”를 추가 (안 제2조 제2호)
- 정선군양육비등지원시책운영위원회의 운영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를 신설함(안 제6조)
-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출산육아용품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군수는 양육 비 외에 필수적으로 양육에 소요되는 출산육아용품 등을 구입하도록 출생아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를 신설함 (안 제13조의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6. 15.

정선군조례 제2254호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선군의회 의장
2.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3. 정선경찰서장
4. 육군 제8087부대 1대대장
5. 정선소방서장
6. 국가정보원 정선군관계관
7. 제536기무부대 정선군관계관
8. 정선군재향군인회장
9. 그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만료 전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협의회의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 1.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 : 자치행정과장
- 2. 경찰담당간사 : 정선경찰서 정보보안과장
- 3.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작전과장
- 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동원과장

⑥협의회의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정선군방위협의회
-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정선군민방위협의회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제3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와 관련된 사항
 - 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와 관련된 사항

- 5. 통제구역 설정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통합방위법」 (2009.5.21,법률 제967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어 (대통령령 제21827호) 2009.11.22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선군통합방위협의 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보완·정비 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정 목적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개정 (안 제1조)
 - 법 적용조항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 ⇒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로 조문 변경
-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함 (안 제2조)
 - 국가정보원 정선군관계관, 제536기무부대 정선군관계관, 정선군재향군인회장
-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중 분야별로 간사 지정 (안 제2조제5항)
 -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자치행정과장
 - 경찰담당간사 : 정선경찰서 정보보안과장
 -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작전과장
 -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동원과장
- 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 운영 (안 제2조제6항)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정선군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 본법」 제7조에 따른 정선군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토록 규정
-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일부신설 (안 제3조)
 - 통합방위 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 함
 -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 설치 및 유지와 관련된 사항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6. 15.

정선군조례 제2255호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와 제3조의3을 각각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분할발주 등)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제3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하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지원을 위해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검토·시행할 수 있는 규정마련,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 명시·권장 등 정선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지원을 위해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검토·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 등 참여비율 권장문구 명시(안 제3조의3)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6. 15.

정선군조례 제2256호

정선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2. 개별화물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3. 용달화물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에 따른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4. 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여객자동차(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적용대상 (안 제3조)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안 제4조)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6. 15

정선군규칙 제1180호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이하“조례”라고 한다)”를 “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2조제2항”을 “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이하“조례”라고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조”를 “같은 조”로 하며, “각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 정 이 유

- 보육료 지원체계의 변경으로 소득인정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어려운 가구로 볼 수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생활이 어려운 가구로 볼 수 없는 일부조항 삭제 (안 제2조)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6. 15

정선군규칙 제1181호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세 자녀 이상 세대”를 “정선군 출생아”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60일 이내에 양육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상위조례의 제명 변경 및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금지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 세 자녀 이상”을 “출생아”로 함.
(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기준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60일 이내에 양육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정한다.”로 함. (안 제3조 제3항)
- 지원금 지급방법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한다.
(안 제5조)

사방지 지정 고시문

정선군고시 제2011-47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야를 사방지로 지정하고자 이를 고시합니다.

2011. 5. 31.

정 선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면적 (ha)	사방종류	소유자
군	읍,면	리	지번					
정선	화암	물운	산227번지의외 2필지	임 외2	2,116,239	0.082	산림유역관리	장정자 외1

※ 필지별 내역은 사방지 지정명세서와 같음-정선군청 산림정책과 비치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3. 지정대상 : 사방사업 실행지

4. 지정년월일 : 2011. 5. 31.

5.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는 정선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목의 벌채, 토석, 나무 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6. 기타 사방지의 지정 구역 도면은 정선군 산림정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함.

사방지 지정 명세서

○ 산림유역관리사업(정선 화암 물운)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	지정 면적 (ha)	소 유 자	
시군	읍면	리동					주 소	성 명
계			3필지		2,116,239	0.0820		
정선	화암	물운	산227	임야	1,823,777	0.0020	태백시 황지동 38-171	장정자
			360-1	도로	7,185	0.0010		국(건설부)
			754	하천	285,277	0.0790		국(건설교통부)

정선군공고 제2011-336호

2011년 여행바우처 사업 공고

군민의 국내관광 활동을 통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1. 6. 3.

정 선 군 수

1. 신청자격 요건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인 자로 참가자 구성

2. 신청방법

- 여행바우처 웹사이트(www.tvoucher.kr)에서 온라인 신청(원칙)
 -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는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여야 함.

구 분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단체가 일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인솔자 등으로 여행 참가자(보호자 등 포함 최대 40명까지 가능)를 구성·신청 ※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여행 진행·인솔을 위한 필요 최소 인원도 보호자로 구분하여 여행참가자로 신청 가능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 내 여행바우처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최근 1년 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여행 참가자가 다른 경우 신청 가능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 기획의도, 신청취지, 복지시설 특징, 여행 내 교육문화프로그램(최소 2시간 이상) 운영 내용, 구성원 특이사항, 보호자 필요성 등 여행바우처 웹사이트 해당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기관 현황 등 관련서류 파일 업로드 첨부

- ※ 취약계층 여행 활성화를 위한 여행인솔자 등 보호자 지원
 - 복지시설단체 또는 지자체 기획 여행바우처 사업의 경우 여행 참가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보호자(행사진행자, 의료진 등)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자가 기초·차상위 등이 아니어도 여행 참가자로 보아 필수 인원만큼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가능(필요 최소 인원만 신청할 것)

- 최종 지원되는 보호자 인원을 선정기관(지자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신청할 경우 선정심사 시 감점 처리

3. 바우처 지원내용

-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전국 여행사에서 취급하는 국내 여행상품을 여행바우처 카드로 구매·결제할 경우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 이용가능 상품 예시

- 여행사에서 취급 판매하는 국내여행 결합(패키지) 상품 : 숙박을 포함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또는 교통·숙박·기타 관광서비스(관광·식사·쇼핑 등) 등이 결합되어 제공되는 상품
- 여행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단일 상품 : 숙박(호텔, 콘도, 펜션 등), 철도·항공·선박 등 티켓 발권, 렌터카, 온천(스파)이용권, 에버랜드·아쿠아리움·놀이동산 등 각종 관광지 입장권·이용권 구매 가능

구 분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지원내용	○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 최대 한도액 내에서 실제 구매·결제 금액 기준으로 지원 예) 甲복지시설 선정(30명 인원, 1박2일 국내여행) 30명*15만원=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 가능(초과분은 복지시설 등 부담)
지원인원	○ 1개 단체
비 고	○ 신청 후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여행바우처 웹사이트 여행상품 견적관리 메뉴를 통해 여행사 대상으로 적합 상품 제안 및 견적 요청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1. 6. 2. ~ 6. 12.
- 접수기간 : 2011. 6. 13. ~ 6. 21. (18:00까지)
 - 해당 접수기간에 신청한 자에 대해 유효한 신청으로 접수 처리
 - 선착순 신청 접수가 아니며,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 등 선정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 접수방법
 - 여행바우처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되는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 접수가 원칙임. (우편접수 불가)

※ 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식은 여행바우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5. 향후일정 안내

- 여행바우처 최종 선정결과 공지 : 2011. 6. 27. ~ 6. 30.
- 여행바우처 카드 발급 : 2011. 7월 초
 - ※ 신청자가 기재한 주소로 개별 배송 예정
- 여행바우처(카드) 사용 기간 : 2011. 12. 31까지

6.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바우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선정 무효 및 향후 여행바우처 수혜자로 선정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은 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지원하지 않음.
 - 신청 서류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바우처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바우처 카드 발급 등이 유선으로 안내되오며,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도 안내 조치가 없음.
- 1) ※ 최종선정 결과는 여행바우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공지
- 여행상품 변경, 취소 등은 여행사와의 계약 및 여행약관에 따라 처리되오며, 본인 사정에 의한 상품 취소 등으로 인한 수수료 발생 분은 바우처에서 지원되지 않음.
 - 여행 시 안전과 사고발생의 보장 등을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 권장함.
- 2) ※ 복지시설 단체여행의 경우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 기타 자세한 안내는 정선군 관광문화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대표문의 :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560-2368)

정선군공고 제2011-347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1. 6. 7.

정 선 군 수

1. 지정 연월일 : 2011. 06. 07.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마을명	위 치	규 모(㎡)
개미들마을	남 면 낙동2리520-2 일원	토지:14,578㎡ 건물 연면적:1,421㎡
365행복마을	북평면 장열1리 264-3 일원	토지:5,816㎡ 건물 연면적:801.83㎡
백두대간생약초마을	임계면 도전리749-3 일원	토지:35,874㎡ 건물 연면적:1,956.31㎡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마을명	대표자	주 소
개미들마을	최 법 순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525-3
365행복마을	최 진 규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494
백두대간생약초마을	안 만 기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731-5

4. 사업개요

마을명	사업개요
개미들마을	농촌문화체험·휴양마을 운영을 통한 도·농교류활성화 및 농촌소득 증대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365행복마을	농촌문화체험·휴양마을 운영을 통한 도·농교류활성화 및 농촌소득 증대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백두대간생약초마을	농촌문화체험·휴양마을 운영을 통한 도·농교류활성화 및 농촌소득 증대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4. 붙 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지정조건 각 1부(홈페이지 참조)

정선군공고 제2011-348호

2011년도 마을관리휴양지 지정 공고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마을관리휴양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1. 6. 8.
정 선 군 수

명 칭	위 치	면적(km ²)	지정일	운영기간	비고
회 동 마을관리휴양지	정선읍 회동1리	0.033	2011. 6. 8	2011.07.01 ~ 2011.08.31	
흥 터 마을관리휴양지	여량면 유천3리	0.027	"	"	
항골계곡 마을관리휴양지	북평면 북평5리	0.05	"	"	
졸 드 루 마을관리휴양지	북평면 나전2리	0.018	"	"	

정선군공고 제2011-352호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안내 및
열람공고(변경)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굴암리, 광하리 일원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을 위하여 「자연
공원법」 제4조의 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5,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안) 의견청취와 사전환경성검토 초안보고서에 대
한 주민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이해당사
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5. 27.
정 선 군 수

- 1.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목적 : 「자연공원법」 제4조의4, 「환경정책기본법」 제 25조의 5,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군립공원 지정(안) 및 사전환경 성검토 초안보고서에 대한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이해당사자 등 의 의견청취 및 열람
- 2.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가. 일 시 : 2011년 6월 17일 (금) 14:00시
 - 나. 장 소 : 정선군청 대회의실
- 3. 주민설명회 개요
 - 가.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안)
 - 위 치 : 정선읍 북실리, 굴암리, 광하리 일원
 - 면 적 : 1,375,433㎡
 - 나. 사전환경성검토 초안보고서
- 4.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 당초 : 2011년 5월 27일 ~ 2011년 6월 16일
 - 변경 : 2011년 5월 27일 ~ 2011년 6월 28일
 - 나. 열람장소 : 정선군 녹색환경과
- 5.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가. 공청회 당일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 나. 공청회 개최 후 7일(2011. 6. 24)까지 정선군 녹색환경과에 서면으로 제출
-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녹색환경과(☎560-23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358호

2011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

정선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1. 6. 13.

정 선 군 수

1. 선발인원 : 21명

가. 사업내용 및 읍·면별 선발인원

구 분	사업내용	선발인원	비 고
계	2개 분야	21명	
생산성사업	공중화장실관리 녹지조성 등	19명	정선읍4명, 고한읍3명, 신동읍2명, 화암면2명, 남 면2명, 여량면2명, 북평면2명, 임계면2명
환경정화사업	재활용품 및 쓰레기 분리	2명	사북읍2명

2. 신청자격

가. 연 령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나.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사업참여 자격 배제 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3. 제출서류 및 접수

가. 제출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나. 접수기간 : 2011. 06. 15 ~ 2011. 06. 20(6일간)

다. 제 출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담당 부서)

4. 선발방법 : 서류심사

5. 합격자 발표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부서

6. 사업기간 및 조건

가. 사업기간 : 2011. 7. 1 ~ 11. 30(5개월)

나. 조 건 : 1일 8시간 주5일(월~금)

다. 수 당 : 1일 35,000원, 주·월차수당, 교통간식비 별도지급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지역경제과(033-560-2154)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360호

농축산물 도난 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농축산물 도난예방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1. 6. 9.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농축산물 도난 예방용 CCTV 설치
2. 예고기간 : 2011. 6. 09 ~ 2011. 6. 29(20일간)
3. 설치장소

연번	설 치 예 정 장 소	비 고
1	정선읍 용탄리 산 167-10번지 골암리 진입로(국도 42번)	차량번호인식 2대 영상촬영용 1대
2	여량면 구절리 238-5번지 종량동(지방도 415번)	차량번호인식 2대 영상촬영용 1대
3	임계면 송계리 866-9번지 소란마을(국도 42번)	차량번호인식 2대 영상촬영용 1대

4.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5. 의견제출기간 : 2011. 6. 09 ~ 2011. 6. 29(20일간)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 6.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청 농업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마. 문의 및 의견 제출안내 : 정선군청 농업축산과

■ 우편 : (우)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봉양리 267번지)

■ 전화 : 033 - 560 - 2985, ■ 팩스 : 033 - 560 - 259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농축산물 도난 예방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농축산물 도난 예방용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농축산물 도난 예방용 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 하